

■ 최신 판례 ■

## [조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박용대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 구상수 공인회계사

### 1. 판결 요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9년 3월경 A건설회사로부터 약 13억 9,100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한 후, A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파주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3. 판결 이유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실시한 후, 그 법적 성질을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등). 부가가치세법은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정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소송실무의 관점에서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반대의 견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오납부금 반환청구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실무관행도 확립된 상황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구태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 선택이나 소송실무상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4.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기존 판례 법리

**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 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 법리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써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뿐 정부에 대하여 과오납부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과오납금의 환부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정부가 부가가치세

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 5. 유의할 점

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0조는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하여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7조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한 소송을 종전처럼 민사법원에 제기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이송될 수도 있지만, 이송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43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가집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26조), 부가가치세 및 세법 전반에 관한 법리를 갖춘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뀐 제도 하에서는 종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6.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